



일본의 예산집행조사 제도

정보신청기관 : 조달청 시설총괄과

I. 예산집행조사제도의 개관

1. 예산집행조사의 개념

예산집행조사란 재무성 회계국·전국의 재무국¹⁾의 담당자가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예산집행조사의 목적은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금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²⁾하여 재무국의 협조하에 공무원이 직접 사

업현장에 가서 실제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사결과는 다음 년도의 세출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예산집행조사의 법적근거

재무대신은 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조정기능, 또는 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징수권능 등 국고대신으로서의 재정총괄권능을 가지고 있다.



1) 재무국은 재무성의 종합적인 출장소(지소 또는 파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로서 지역에 있어 재정이나 국유재산 등에 관한 시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실정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이를 재무성의 시책의 기획 입안에 반영해 가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를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금융청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에 있어서의 민간금융기관 등의 검사·감독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재무국은 전국적으로 북해도재무국, 동북재무국, 관동재무국, 북륙재무국, 동해재무국, 근기재무국, 중국재무국, 사국재무국, 구주재무국, 후쿠오카재무지국, 오키나와종합사무국(재무부) 등이 있다.

재무국의 업무는 ① 재정에 대한 업무, ②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③ 담배·소금 사업에 관한 업무, ④ 지역경제정세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⑤ 금융·증권 등에 관한 업무, ⑥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이다.

2) 별첨 1 - 2 참조.

재정법 제18조

- ① 재무대신은 전조의 견적을 검토해서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여 세입, 세출, 계속비, 이월명세비³⁾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개요를 제작하여 내각의 각의결정⁴⁾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내각은 전항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국회, 재판소 및 회계검사원과 관련되는 세출의 개요에 대해서는 미리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장관 및 회계검사원장에게 그 결정에 관해서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계법 제46조

- ① 재무대신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각 성청에 대해서 수지의 실적 혹은 예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내각의 각의결정을 거쳐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재무대신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각 성청의 장에 위임해서 공사의 청부계약자, 물품의 납입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보조금의 최종 수령자를 포함), 또는 조사, 시험,

연구 등의 위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집행조사는 이 재정총괄기능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집행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평가·분석·검토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시킴으로써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조사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행정지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6.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사무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의 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그 외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예산집행조사의 내용

예산집행조사는 다음과 같이,

1. 사업의 효과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
2. 사업의 진척상황



3)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24조의 명시이월비와 같은 것이다.

4)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합의체인 내각의 의사결정을 말한다.

3. 사업의 비용이 사업효과에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크게 3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집행조사는 재정자금의 효율적·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산의 「플랜(예산 편성)」·「집행(예산의 집행)」·「체크(평가·검증)」·「액션(예산에의 반영)」의 절차 가운데「체크」·「액션」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에 적확하게 피드백하는 제도이다.

4. 예산집행조사결과의 공표⁵⁾⁶⁾

조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4월에 선정하여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결과 및 다음 년도에의 예산에의 반영상황에 대해서는 재무성의 예산집행평

가회의에서 정리하여 공표되고 있다.

5. 예산집행조사의견 수렴

예산집행조사의 대상안건을 선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재무성에서는 홈페이지에 「예산집행의견」을 받는 항목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

6. 예산집행조사실의 설치

재무성은 공공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일자로 「예산집행조사실」을 회계국내에 신설하였다.

〈예산집행조사와 정책평가, 회계검사와의 차이점〉⁷⁾

| | 주체 등 | 주된 목적 | 주된 착안점 | 대상 |
|---------|---------------------------------|---------------------|-------------------------------|---|
| 예산집행조사 | 예산편성에 관계한 재정당국에 의한 조사 | 예산의 효율화, 합리화 |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 유효성 |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무, 사업 |
| 정책평가 | 각부성에 의한 자기평가(총무성에 의한 객관성 등의 체크) | 각성청의 정책에의 적절한 반영 여부 | 정책 등의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 정책 등 일반 |
| 회계검사 | 제 3 자기관에 의한 검사 등 | 회계검사원(내각으로부터 독립) | 예산집행의 정확성, 합규성,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 · 국가, 국가가 출자한 법인, · 국가가 보조금등을 교부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 등 |
| 행정평가·감시 | | 총무성 | | |



5) 별첨 3 참조

6) 재무성 동해재무국의 예산집행조사 결과 및 예산에의 반영 등을 공표한 상세한 자료가 <http://www.mof-tokai.go.jp/zaisei/yyushi/19chousa-syu2.pdf>에 소개되어 있음.

별첨1 2007년도 예산집행조사대상사업(本省조사;財務局⁸⁾ 공동조사)

| 성청명 | 사업명 | 전국분의 정리 | 비고 |
|-------|--|---------|----|
| 경제산업성 | 창업, 벤처관련 사업(독립행정법인 ⁹ 중 소기업기반정비기구) | 中國財務局 | |
| 문부과학성 | 학교규모의 최적화에 관한 조사 | 東海財務局 | |
| | 가정교육지원종합추진사업 | 關東財務局 | |
| | 국공사립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지원의 충실 | 近畿財務局 | |
| 방위성 | 장해방지사업에 있어서 하천개수 | 재무성 | |

별첨2 2007년도 예산집행조사대상사업 (財務局¹⁰ 조사)

| 성청명 | 사업명 | 전국분의 정리 | 비고 |
|--------|--------------------------|---------|----|
| 총무성 | 지역인트라넷기반시설 정비사업 | 四國財務局 | |
| 문부과학성 | 중요과제해결형 연구의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 | 中國財務局 | |
| | 저작권에 관한 보급계발사업 | 中國財務局 | |
| 후생노동성 |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제도 지원사업 | 東北財務局 | |
| 농림수산업성 | 中山間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 北陸財務局 | |
| | 국영토지개발사업 | 北海道財務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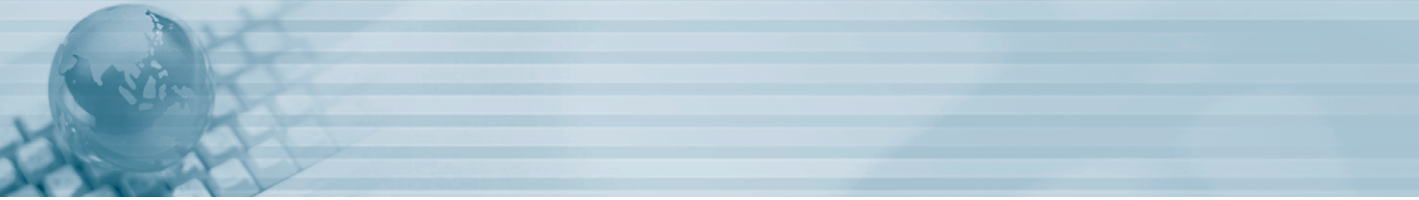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7) 金井哲男, 「平成17年度予算執行調査の結果等について」, ファイナンス, 2005. 9.

8) 재무국의 법적 의의는 각주 1번을 참조.

9) 독립행정법인이란 각 府省의 행정활동에서부터 정책을 실시하는 업무 가운데 일정한 사무·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독립의 법인격을 주고, 업무의 질 향상이나 활성화, 효율성의 향상, 자율적인 운영, 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법인이다.

즉 국민생활·사회경제의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로부터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이지만,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민간의 주체에 맡겨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독립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공법인을 말한다.

10) 재무국의 법적 의의는 각주 1번을 참조.



| | | | |
|---------------|------------------|-------|--|
| 경제산업성 | 교육정보화촉진기반정비사업 | 近畿財務局 | |
| | 對日직접투자촉진사업 | 東海財務局 | |
| 국토교통성 | 철도역방재관계사업 | 根氣財務局 | |
| | 사방사업의 비용감축 | 東北財務局 | |
|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업성 | 재해복구사업의 비용삭감사례조사 | 關東財務局 | |
| 환경성 | 對策技術率先導入사업 | 關東財務局 | |

별첨3 예산집행조사의 평가 공표(참고례)

| 시책명 | 적정한 예산집행의 확보 |
|-------------------------------|--|
| 시책의 개요 | 국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또한 경제적,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노력함. 그리고 예산의 효율화를 더 충실히 도모하기 위해 예산집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
| 시책에 관한 평가 결과의 개요와 달성해야 할 목표 등 | <p>【평가결과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성도 : C 달성을 향해서 일부 진전에 그침 2. 사업운영의 절차의 적절성 · 유효성 · 효율성 전체적으로 적절/전체적으로 유효/전체적으로 효율적 3. 결과분석의 정확성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행해짐 4. 개선책의 제언 정책에 대해서 유익한 제언이 행해짐 <p>(2006년도의 운영개황) 2006년도에 있어서는 재무성 회계국의 예산시정 담당자에 의한 본성 조사에 더해서 사정참고정보 수집으로서 종래 실시되고 있었던 재무국 조사를 확충한 다음 그 조사결과 및 예산에의 반영액을 새롭게 공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도 예산에 적확하게 반영함. 또한 수의계약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각 부성의 재검토 상황을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함.</p> <p>(달성도에 관계하는 평가의 이유 등) 예산집행조사에 대해서는 재무국 조사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그 조사결과 및 예산에의 반영액을 공표한 것. 또 정보공개를 더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한 대책을 각 부성청에 대해서 통지하는 등 수의계약의 적정화에 노력</p> |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계속해서 적절한 예산집행의 확보를 향한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C 달성을 향해서 일부 진전에 그침」이라고 평가함.

【주된 참고, 모니터링지표】

참고, 모니터링지표1-3-③:예산집행조사의 실시상황의 추이(단위:건수)

| | 2003 | 2004 | 2005 | 2006 |
|-------|------|------|------|------|
| 본성조사 | 51 | 53 | 53 | 57 |
| 재무국조사 | 2 | 6 | 4 | 11 |

| | | | |
|-------------------------|---|-----|------|
| 평가결과의 예산집행요구 등에 반영내용 | 2006년도 정책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계속하여 예산집행의 적정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조사를 충실하게 할 것 등 필요한 경비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함(2008년도 개산 요구 : 43 백만엔 [2007년도 예산 : 36백만엔]) | | |
| 관계있는 시정 방침연설 등 내각의 중요정책 | 관계있는 시정방침연설 등 | 년월일 | 기재사항 |
| 비고 | | | |

최 철 호
(청주대 법대 교수)